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13 호

제안년월일 : 2002. 9. 6
제 안 자 : 김성렬의원 외 1인

1. 수정(폐지)이유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가 적을 경우 본 조례의 취지가 남용될 소지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의 "200인"을 "500"으로 수정함.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1,000인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 …… …… …… ……200인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 …… …… …… ……500인으로 한다.